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내년부터 건보료 연체 5개월 내 해소 땀 혜택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정도 이내에 연체료를 내면 추가비용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부당이득금)를 환수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연체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밀린 건보료를 내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연체자에게 진료 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은 통상 진료일로부터 2개월이 넘기 때문에 건보료 연체자들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정도 이내에만 밀린 건보료를 내면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200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누적된 부당이득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보료 연체자의 25% 정도는 빌딩과 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연체자'이기 때문에 연체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중단 제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현역 사병과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휴가기간 등에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본인부담금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불한 뒤 국방부(현역 사병)와 행정자치부(전투경찰) 등 해당 부처에 청구하게 된다.

(동아일보, 2003. 8. 3)

모체 영양, 태아에 결정적 영향 미쳐

임신 전과 임신 중 모체의 영양이 태아의 특징과 질병이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롭 워터랜드 박사는 '분자세포생물학' 최신호(8월1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새끼를 밴 쥐들에 특정 영양소들이 함유된 보충제를 먹인 결과 털가죽 색깔이 다른 새끼들이 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워터랜드 박사는 일단의 암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비타민B12, 엽산, 콜린, 베타인 보충제를 먹이고 다른 그룹은 주지 않은 결과 영양제 그룹은 털가죽 색깔이 갈색인 새끼를 압도적으로 많이 낳고 비교그룹 쥐들은 정상대로 노란색 새끼들을 출산했다고 밝히고 이는 이 4가지 영양소가 털가죽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아구티(Agouti)라고 불리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랜드 박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랜디 저틀 박사는 임신 중 영양소의 섭취가 발육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는 평생 지속되어 대대로 유전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것은 유리하고 또 어떤 것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워터랜드 박사는 이 결과는 결국 임신 중 영양소의 섭취가 태아가 지닌 유전자 자체는 변이시킴 없이 발현되는 유전자와 침묵을 지키는 유전자를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두 쌍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며 이 두 쌍의 유전자는 하나만이 발현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는 현대 유전학의 선구자 그레고르 멘델이 초록색 콩과 노란 콩의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부모가 모두 갈색 눈인데도 자식은 파란 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워터랜드 박사는 이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영양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된 일이 있다면 그 중에는 영양이 결핍된 임신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나중에 당뇨병과 심장병에 잘 걸린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03. 8. 4)

국립암센터, "담배성분 일부 청산가리 계열"

'담배소송' 4년째... '개인책임-국가책임' 공방

지난 99년 6월 제기돼 4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국립암센터가 최근 재판부에 흡연과 암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폐암 투병 중 숨진 김모씨가 지난 99년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암센터에 요청한 자료가 1년여만에 재판부에 도착한 것.

28일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담배에는 기존에 알려진 발암물질 50여종 외에 과량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다량 들어있으며 특히 시안수소일명 청산가스)는 청산가리와 같은 계열의 물질이다.

국립암센터는 "발암물질의 농도와 양이 적더라도 장기간 노출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금연성공률이 20% 전후에 불과한 것은 니코틴 중독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은 자료 등을 토대로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일단락 짓고 2차 쟁점인 '흡연자 개인선택의 문제와 담배인삼공사의 유해성분 은닉여부' 등을 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 및 제조관련 295건의 목록 원본열람과 사본교부, 전산기록 열람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내주 중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담배 공방'은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흡연과 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받아들여진 미국의 분자생물학 자료 등을 증거보강 차원에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대전지법 판결이 인용돼 담배인삼공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

출할 방침이다.

'담배소송'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한 바 있고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난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은 재판부가 올해 안에 결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2003. 8. 28)

육아휴직 월 급여액 4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혜택이 훨씬 많아진다. 정부는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의 각종 세금지원 및 보육시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다, 추가 소득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중 하나를 골라 연간 총 25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도 기본공제는 물론 추가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공제 한도와 보육비 공제한도도 50만원씩 늘어나 6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공제혜택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만일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800만원, 3명인 경우 1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라고 해서 부부가 중복해서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정부는 또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휴가 90일분 급여 중 회사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30일분의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60만원 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아직 상한액 확대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중인 160만원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 월 급여액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하는 0~4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도 올해 11만 9000명에서 내년에는 19만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3. 8. 25)